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2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1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8년 1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가. 제안이유

-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시키고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조례에서 당연적용 대상이며, 반복규정 금지 원칙에 따라 삭제
 - 현행 제3조(정관) 및 제12조(사업연도)
- 현행 조례와 법령과의 불일치 규정 삭제
 - 현행 제6조(임원) 및 제7조(임원의 임무)
 - 현행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9조(의결정족수)
 - 현행 제10조(직원의 임면)
 - 현행 제13조(사업계획서 등)
- 그 밖의 조례입법의 각종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순서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단 설립 및 법인격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사업 수행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재산, 출연, 무상대부 등
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의 파견
안 제9조에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조례입법의 각종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조문을 체계적이고 적법하게 정비한 것임.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법인격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두되, 그 구체적 위치는 해당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인의 창작, 전시, 교육 등 활동 보급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굴·육성
3. 우수 예술창작품의 개발 및 유망 예술인의 발굴 지원
4.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콘텐츠의 발굴·육성 및 문화예술 유산의 계승·발전
5. 국내·외 교류 및 홍보
6.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7. 그 밖에 군수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 강원도 또는 군에서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2.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

제5조(재산) 재단의 재산(제3호에서 “재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그 밖의 재산

3. 재산의 운용수익금 및 사업수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6조(출연 등) ①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그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요청을 받거나 재단이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유 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2. 수익사업

3.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단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의 위탁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재단과 군수 및 재단이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처리 중인 사항 중 법 시행일(2015.9.25.)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되, 그 이후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